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0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이원택·정동영·안호영

윤준병 • 박희승 • 한병도

김윤덕 • 신영대 • 이춘석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 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 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법률 제 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
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 등) ①
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	
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	
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	
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	
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u><신 설></u>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
	의 시행자
<u>자.</u> (생 략)	<u>차.</u> (현행 자목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